

**동물범죄**

#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모색**

2022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12시 | 국회의원관 제9간담회실

주최



**조정훈**  
국회의원 의원실

**동물권행동 카라**



# 목차

## 축사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국회의원

임순례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

## 발제

대한민국 동물범죄 양태와 처벌 추이 및 해외 대응 사례 5  
동물권행동 카라 | 전진경 대표

동물범죄 양형기준 방향성 17  
한남대 경찰학과 | 박미랑 교수

## 토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관하여 31  
울산지방법원 | 유정우 판사

국내 동물범죄 수사의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하여 41  
강남경찰서 | 김영준 수사관

동물 법적지위에 따른 처벌의 한계 및 개선방향 45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 서국화 변호사 / 대표

국내 시민사회 동물범죄 대응 현실 47  
동물권행동 카라 | 윤성모 활동가

# 축사



양형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형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입니다.

동물학대범죄의 바람직한 양형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조정훈 국회의원님과 동물권행동 카라의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고, 동물학대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끔찍하고 잔인한 동물학대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동물학대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양형위원회에 보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은, 양형실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특히 양형기준이 합리적인 지침으로서 양형실무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깊이 있고 종합적인 선행 연구와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오늘의 논의 내용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양형실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등 동물학대범죄의 양형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가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을 일깨우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8.

양형위원회 위원장 김 영 란



국회의원  
조정훈

안녕하세요. 입법노동자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자리해주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물범죄 양형기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물권행동 카라’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김영란 양형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유기와 학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동물범죄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991년 동물학대죄가 신설된 이래로 계속해서 처벌의 범위는 추가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이고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처벌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심각한 생명 경시의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동물 대상 범죄 양형기준의 부재로 인한 사법당국의 온정적 태도는 ‘반(反) 동물학대’라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판결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법원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시급한 양형기준 대상보다 법정형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이 한 차례 제외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동물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사이 간 충돌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엄격하고 예측가능한 양형기준의 마련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동물범죄 처벌의 근간이 되는 양형기준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개진되어 사회적 인식에 걸맞는 일관되고 강화된 양형기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동물범죄에 대한 논의가 오늘 토론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8일

국회의원 조정훈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  
임순례**

우리사회는 최근 몇 년,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 전지구적 위기에 직면하고 대형참사 발생으로 인한 시대적 암울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될수록 사회내 가장 소외된 계층이 우선적 피해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라 동물권의 중요한 이슈들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잔인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동물학대의 근절문제 역시 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동물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엄중한 처벌이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는 현실이 시민들을 좌절로 이끌고 변화를 이끌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매우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아주 오랫동안 동물 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동물단체의 입장에서 잔혹하게 학대·살해당한 동물 사건을 직접 고발하면서 엄중 수사 와 강력 처벌을 추구하고 제도적으로 동물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 강화를 전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동물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누구냐에 따라 상이한 처벌이 내려지거나 동물범죄를 강력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양형기준 조차 없는 현실의 벽을 깊이 절감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본 토론회가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최근 동물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이라는 존재가 ‘물건’이라는 법적지위를 넘어 착취와 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요구에 목소리를 모으며 직접 행동을 보이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이 수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동물범죄의 양형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자리가 동물도 사람도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진일보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바쁜 와중에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8일  
임순례

# 대한민국 동물범죄 양태와 처벌 추이 및 해외 사례 비교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 대한민국 동물범죄 양태와 처벌 추이 및 해외 사례 비교

2022년 12월 8일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 목차

01 / 들어가며

02 / 대한민국 동물범죄 현황

03 / 해외 동물범죄 대응 사례 -  
RSPCA 중심으로

04 /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시급

동물권행동 카라

# 1. 들어가며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현행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약하다'**라는 응답이 **48.4%**

개, 고양이 뿐만 아니라 햄스터, 토끼 등 **소동물부터 야생동물까지** 다양한 범주의 동물 대상 학대 행위 빈번히 발생

특히 최근 학대 행위를 불특정 다수에 의도적으로 노출, 이를 접한 시민들이 경찰 및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그 과정과 결과가 SNS 소통망을 통해 대중 간 공유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개입**이 일어나고 있음



# 1. 들어가며

고어 전문방 사건



VS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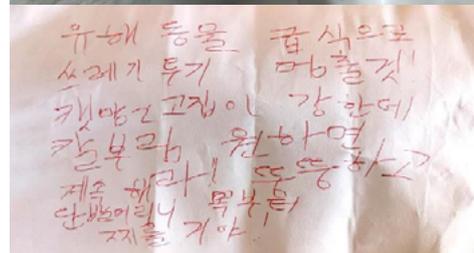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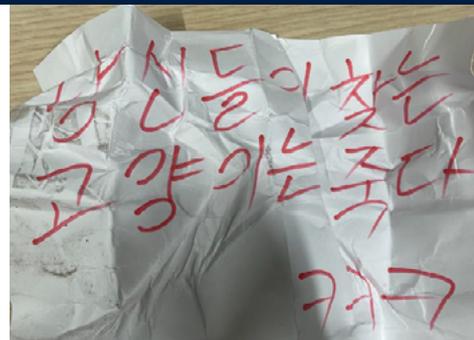


# 1. 들어가며

- 두 사건 모두 동물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SNS, 유튜브**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거나 대중에 게시하며 자신의 행위를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동물에 가해진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
- 두 사건에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이루어졌음에도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포함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은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
-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동물범죄에 대한 인식 차가 상당하고, 재판부에 따라 **형의 종류는 물론 처벌 수위 편차**가 발생
- 시민사회의 동물학대 반정서가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대상이 ‘동물’이라는 이유로 실효성 있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 2. 대한민국 동물범죄 현황

- 동물범죄: **특정 목적**을 지니며 동물을 학대, 살해하는 행위 / **단순 오락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 살해하는 행위
- 후자의 경우, 동물학대 행위를 과시하고 더욱 자극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드러냄
- 길고양이 돌봄 일상화라는 사회 변화에 따른 혐오기반 범죄 빈번히 발생 → **케어테이커를 지정해 협박, 조롱** 등의 글 또한 쉽게 볼 수 있음
-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
-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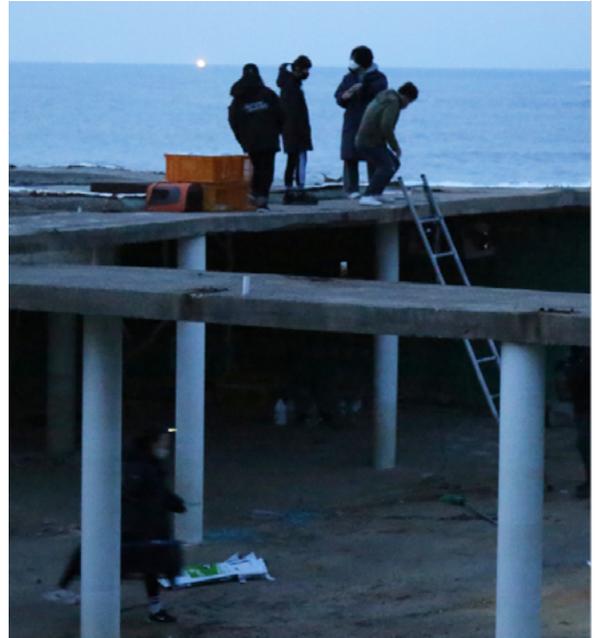


**“캣맘 고집이 강한데 칼부림 원하면 계속 해라. 목부터 찌를거야”**

## 2. 대한민국 동물범죄 현황

###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 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하여 sns에 공개 게시**
- 폐양어장에 고양이를 가두고 학대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시민을 협박
-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 원** 선고
- ‘경의선숲길 길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에 **실형 6개월**이 내려진 2019년보다 가장 높은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그 범행의 잔혹성과 상습성에 비하면 형량이 낮다는 것이 시민사회 시각



## 2. 대한민국 동물범죄 현황

### 아기고양이 흥시 살해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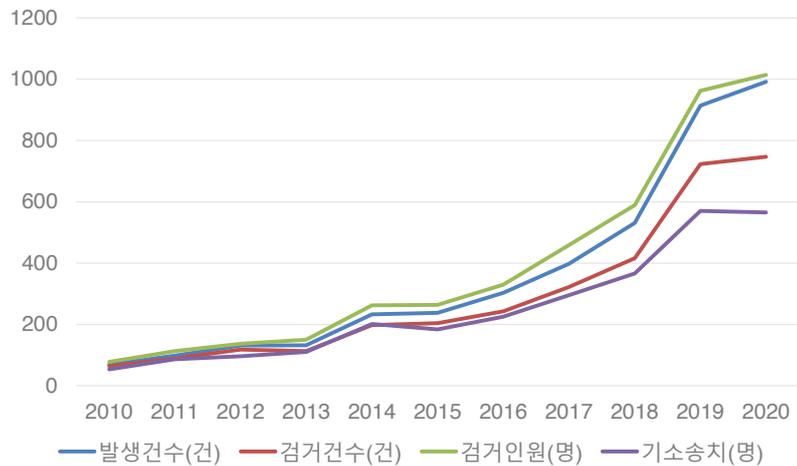
- 2019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포항 시내, 대학 캠퍼스, 초등학교 일대 길고양이 7마리 살해, 3마리 상해한 사건
- 피고인은 범행 수법을 노트에 기록하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작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가며 범행 지속하며 온라인에 자신의 행위를 게시
-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되었으며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경시 위험성이 있으며,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를 야기한 점”을 들며 **2년 6개월 실형** 선고. 2심에서도 **피고의 항소 기각**
- 역대 동물학대 처벌 중 가장 높은 처벌



## 2. 대한민국 동물범죄 현황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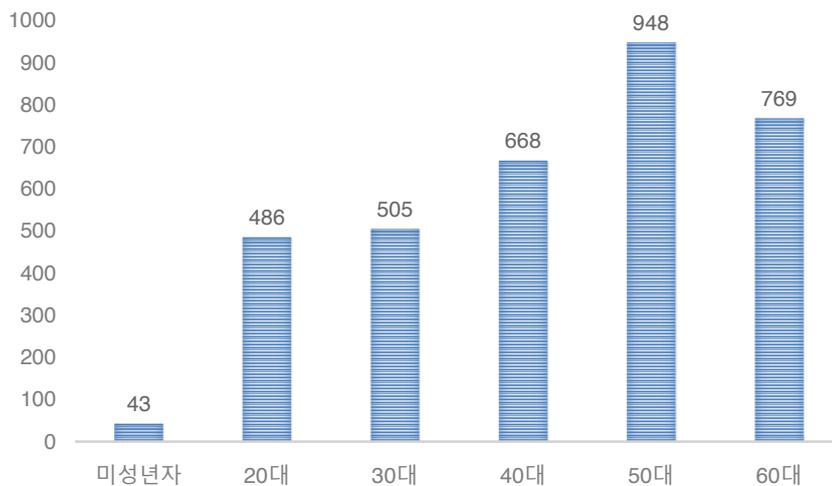
구분	2010	2020	합계
발생건수	69	992	4039
검거건수	64	747	3237
검거인원	78	1014	4358
기소송치	53	565	2751 (5)



출처: 이은주 의원실(자료:경찰청)

## 2. 대한민국 동물범죄 현황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연령대(2010~2020)



출처: 이은주 의원실(자료:경찰청)

## 2. 대한민국 동물범죄 현황

2013년부터 2022년 상반기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자 처벌 관련  
200개 판결문 분석한 결과,

- 형이 확정된 사례 194건,  
201명이 기소
- 이 중 약 82%인 165명이 벌금형
- 평균 벌금액은 140여 만원

출처: MBN뉴스

앞서 언급한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사건’ 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는  
가장 높은 수위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시 최고형인 3년 징역형은 아직까지  
선고된 바 없음

## 3. 해외 동물범죄 대응사례

- 국내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드는 동물대상 범죄 행위 발생
- 미국은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이 나와도 징역형이 많지 않고 벌금도 높지 않았으나 특정 형태의 동물학대에 중범죄(felony, 종종 aggravated animal cruelty로 불림) 혐의를 도입하고 있음
- 범죄의 **의도, 유형, 행위 결과, 상습성** 등 네가지 요인 중 하나 이상을 기반으로 중범죄 여부를 판단함

- **Intention.** Often, animal cruelty is a misdemeanor if the conduct was negligent or **intentional**, but it becomes a felony if it's done maliciously or with "extreme indifference to life" (Wash. Rev. Code Ann. § 16-52.205).
- **Type of abuse.** Many states make torture or mutilation a felony, while other types of injury or neglect may only be a misdemeanor.
- **Result.** In several states, animal cruelty becomes a felony if the animal dies, is seriously injured, or suffers for a long time.
- **Repetition.** Criminal penalties are often increased for **repeat offenders**.

### 3. 해외 동물범죄 대응사례 - RSPCA

#### 영국 동물보호단체 RSPCA 동물범죄 기소 연례보고(2019)

기소 통계 항목 (England 기준)	2017	2018	2019
유죄판결받은 피고인수(청소년 범죄자) Defendants convicted (youth offenders)	696(8)	747(15)	661(10)
치안 및 형사 법원에서 확보된 유죄판결 건수(청소년 범죄자) Convictions secured in the magistrates' and Crown courts (youth offenders)	1,493(25)	1,693(20)	1,432(18)
기소 성공률 Prosecution success rate	91.2%	92.5%	93.7%
재판 후 무혐의된 피고인수 Defendants with all offences dismissed after trial	20	12	12
개인에 부과된 징역형 건수 Prison sentences imposed on individuals	42	66	49
개인에 부과된 집행유예 건수 Suspended prison sentences imposed on individuals	179	159	143
동물복지법에 따라 개인에 부과된 실격 명령 건수 Disqualification orders imposed on individuals under the Animal Welfare Act 2006	602	651	538
<b>각주</b> 1. 전체 피고인 비율로 유죄판결받은 총 피고인 수 2. 1인이 2개 이상의 형을 병과받을 수 있음 3. 실격 명령은 그 자체로 벌칙이거나 부과된 다른 벌칙에 추가될 수 있음			

### 3. 해외 동물범죄 대응사례 - RSP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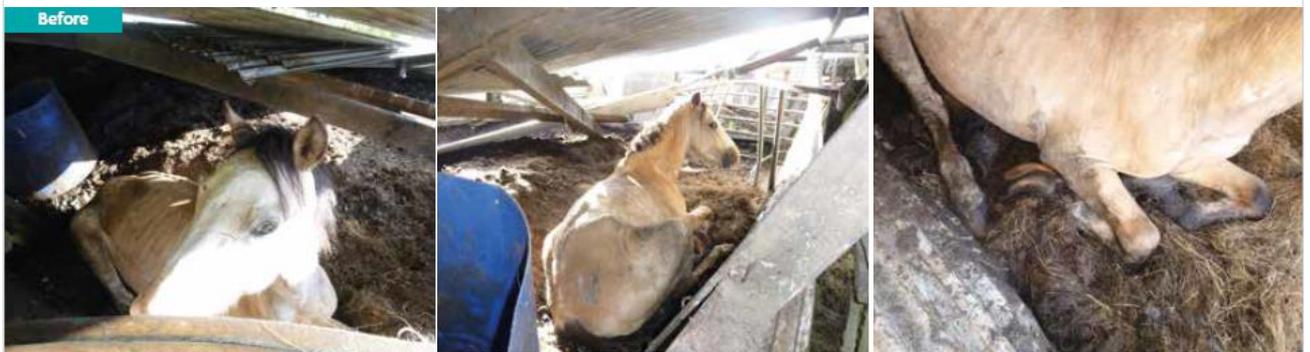
- 영국 동물보호단체 RSPCA(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는 영국 동물복지법에 근거해 동물학대 조사관들이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데, 2017년부터 기소 성공률은 **90%**가 넘음
- RSPCA 조사제도가 국가 수사기관보다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유효한 증거 확보에 유리했을 것이고 따라서 기소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9년 기준 **징역형**이 부과된 건수는 **42건**.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 처분은 **179건**에 달함
- 지난 2021년 동물복지법의 동물학대 처벌 조항은 징역 6개월에서 **최고 징역 5년형**으로 강화된 바 있음

# 3. 해외 동물범죄 대응사례 - RSPCA

## 동물학대 대응사례 - 말

**[사건]** 한 개인 소유의 말이 좁고 낮은 우리에 갇혀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에서 방치된 사례로 동물복지법에 따라 말 소유주가 기소됨

**[판결]** 말 보호자  
 - 5년간 말 사육 금지  
 - 징역 16주 및 집행유예 1년  
 - 180시간 봉사명령 및 25일간 재활 치료명령 (약 300파운드, 한화 47만원)



# 3. 해외 동물범죄 대응사례 - RSPCA

## 동물학대 대응사례 - 강아지

**[사건]** 보호자의 파트너에 의해서 최소 2~3년간 다수의 둔기로 폭행당한 사건. 해당 개는 오른쪽 눈 파열, 턱뼈 골절, 광대뼈 골절, 치아 10개와 갈비뼈 2개, 다리뼈 부러짐

**[판결]** 가해자  
 - 징역 18주 선고, 법정 구속  
 - 동물사육 영구금지 처분



### 3. 해외 동물범죄 대응사례 - RSPCA

동물권행동 카라

#### 동물학대 대응사례 - 고양이

**[사건]** 고양이 2마리를 방치한 사건. 신체 건강상태를 9등급으로 나눌 때 가장 최하인 1등급에 해당될 정도로 두 고양이의 건강상태는 심각했고 버룩에 감염된 상태였음

**[판결]** 보호자 1

- 10년간 동물사육 금지
- 벌금형

보호자 2

- 10년간 동물사육 금지
- 징역 8주 및 집행유예 1년
- 150시간 봉사명령과 10일 재활치료 명령 (약 600파운드, 한화 약 90만원)



### 3. 해외 동물범죄 대응사례 - RSPCA

동물권행동 카라

- 물리적 폭행과 더불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
- 형사처벌과 **봉사명령 또는 치료명령 처분**이 병과
- 무엇보다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것은 동물범죄 예방에 있어서 필요한 것임을 보여줌
-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사육금지 조치 또는 실격 등 판결이 예상 가능할 정도로 일관성이 있음
- 지난해 영국은 동물범죄 양형기준을 수립했지만 그 이전에도 동물대상 범법 행위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또한 학대범죄에 더 효과있는 억제력을 확보하려면 **실제 판결 수위가 중요하고, 일관되고 수용 가능한 양형기준 수립 절실**

## 4.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시급

- 지난 2019, 건설사에 불만을 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현장 책임자의 생후 4개월 된 강아지를 약 6개월에 걸쳐 학대한 동물학대 사건 발생
- **검사는 벌금 200만 원** 처벌을 구형



## 4.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시급

- 본 사건 판결을 맡은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부장판사**는 벌금 200만 원이 아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힘

### <2019고단3906 판결문 발췌>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입법 내용 및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체계 등을 살펴볼 때 이제는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더 이상 간과하거나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

(중략)

동물에 대한 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단순히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시급

- 검찰의 200만원 벌금 구형은 동물학대가 지니는 생명 경시에 대한 처벌의 무게에 부합하지 않음을 비치며 그 **양형 이유를 소상히 명시해 판결**
- 이후 경의선 숲길 길고양이 ‘자두’ 살해사건 피고인에 최초로 **6개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고, 2022년 포항 고양이 연쇄 학대 살해 사건에 **2년 6개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고무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판결들은 결국 동물범죄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음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있는 것

## 4.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시급

### 처벌의 중요성, 그리고 최소한의 예방 장치 ‘양형기준’

- 빈발하는 동물범죄는 동물이 대상이라는 특성 상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모든 범죄사실이 기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
- 어렵게 증거를 확보하여 고발, 기소에 이르러도 재판부에 따라 유사 범죄가 다르게 판결되기도 함
- **‘100만원 벌금 나올걸?’, ‘어차피 집유(집행유예) 나올 거다.’** 등 동물범죄자들의 비아냥이 난무하고 학대 범죄가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처벌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의 예방 장치인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이 필요
- 양형기준은 판사의 ‘참고용’으로 그쳐선 안 되는 바 실효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기준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해야 함
- 입법부 역시 법정형의 상한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한’을 명시하는 작업 또한 필요

# 해외 동물학대 양형과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방향성

한남대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

# 해외 동물학대 양형과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방향성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존재,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  
이러한 대상에 대한 범죄를 행한 자에게 법원이 적절한 형을  
예측력있게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변화이다.”

오늘, 우리의 동물 학대 양형기준

WHY, HOW, WHEN 에 대한 고민

# 목차

1. 들어가기
2. 동물보호법과 처벌
3. 해외의 동물보호법
4. 우리나라 양형기준 방향성
5. 마무리

## 1. 들어가기

2022년 5월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 :

### 동물학대 처벌 강화

- 구체적 내용으로 "동물 학대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포함

### 양형기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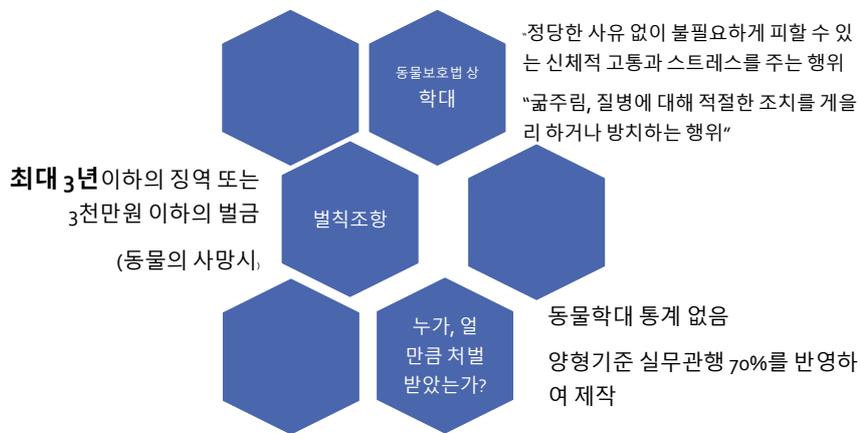
- 그러나 처벌강화와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된 양형을  
위해 여타 범죄와 동일한 기준에서 양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
- 2009년 양형기준 적용 이후 현재 총44개  
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중
- 지속 추가 및 수정 보완중

### 형법범죄에만?? NO

-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범죄 및 행정  
법상 규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환경범죄군, 근로  
기준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등)
- 법정형이 2년 이하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2. 동물보호법과 처벌

### 2-1. 동물보호법과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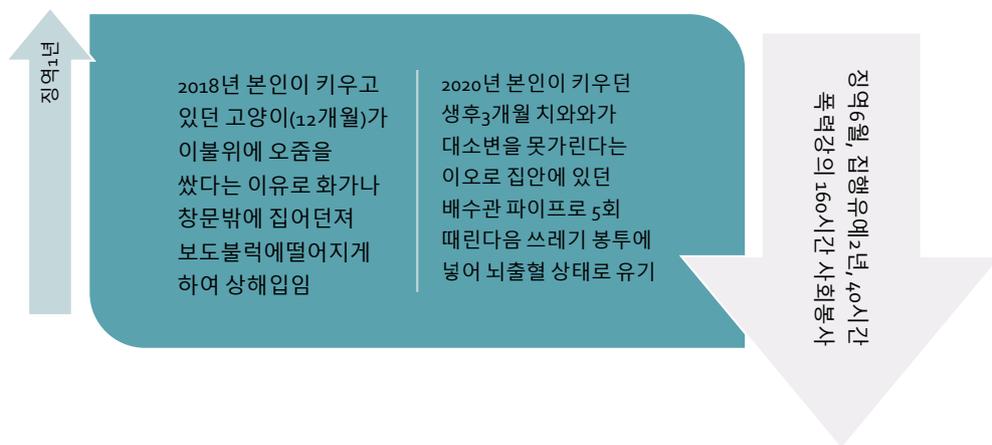


## 2-2. 동물학대 판결례 분석: animal figh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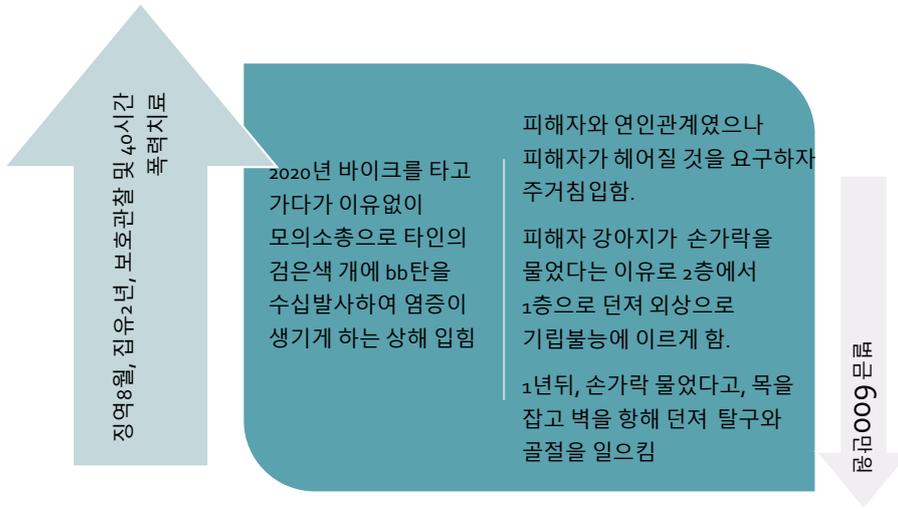
N=27	
가해자 전과	76% 전과 없음. 동종전과 1명
선고량	최대 18개월, 평균 선고량 9개월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자의 60%, 평균집유 2년
보안처분	사회봉사 명령 11명, 120 시간,
치료명령	0명
추가조치	도박에 사용된 동물 몰수

- 도박 한판당 800-1000만원 이득
- \* 일반 도박 범죄자 (victimless) 대비 더 관대하고, 아무런 치료 없었음.
- \* 가해자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양육, 보호 등에 관한 추가적 명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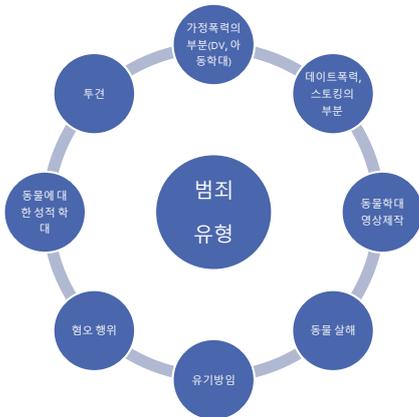
## 2-3. 동물학대 판결차이(1): 본인 반려동물



## 2-3. 동물학대 판결차이(2): 타인 반려동물



## 3. 동물보호법 위반 유형 구분



- 약자를 향한 가해행위
- 약자를 성적 욕구, 돈벌이,, 유희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
- 약자에 대한 폭력에 동반되는 행위
- 혐오행위(against certain group, against certain animal)



체계적 경험적 연구 기반한 정책 필요

- 행위자의 실질적 교정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벌금과 징역형의 줄타기

# 3. 해외의 동물보호법과 양형

## 3-1. 미국

### 연방법

- Animal Welfare Act(AWA)
  - 미국 동물 연구 관련 첫 연방 법(1966)
  - 동물에게 제공해야하는 최소한의 처우 기준
  - 위반시마다 1만불, per animal, per day!(2008)
- 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 (PACT) 2019
  - 동물학대 영상제작 금지
  - 처벌 최대 7년

### 주(state)법: (형법 또는 개별법)

- CA: 동물 고통, 성적접촉
- MD: 개싸움, 닭싸움 금지. 1년이하
- 공문서, 3년이하, 심리상담, 압수, 소유 소지 거 추 금지
- TN: 중학학대, 6년이하 징역, 2번이상 위반자는 평생 반려동물 사육금지
  - 성적 행위, 6년이하 징역
- NY: 동물 고통, 동물 싸움, 성적학대 -최대 5년 이하
- OR-미성년자 앞에서의 해위시 경죄→ 중죄
- 공통점: 소유 및 양육 보호금지

### 3-2. 미국의 양형기준

- 연방법과 각 state
- 범죄심각도\* 전과 기준으로 GRID
-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지 않음.
-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형량 증가
- 예) 동물 싸움 과거 기본구간: 6-12개월 → 21-27개월

**SENTENCING TABLE**  
(in months of imprisonment)

Offense Level	Criminal History Category (Criminal History Points)					
	I (0 or 1)	II (2 or 3)	III (4, 5, 6)	IV (7, 8, 9)	V (10, 11, 12)	VI (13 or more)
1	0-6	0-6	0-6	0-6	0-6	0-6
2	0-6	0-6	0-6	0-6	0-6	1-7
3	0-6	0-6	0-6	0-6	2-9	3-9
4	0-6	0-6	0-6	2-8	4-10	6-12
5	0-6	0-6	1-7	4-10	6-12	8-15
6	0-6	1-7	2-8	6-12	8-15	12-18
7	0-6	2-8	4-10	6-14	12-18	15-21
8	0-6	4-10	6-12	10-16	15-21	18-24
9	2-9	6-12	8-14	12-18	18-24	21-27
10	2-9	8-14	10-16	15-21	21-27	24-30
11	2-14	10-16	12-18	18-24	24-30	27-33
12	10-16	12-18	15-21	21-27	27-33	30-37
13	15-21	15-21	18-24	24-30	30-37	33-41
14	15-21	18-24	21-27	27-33	33-41	37-46
15	21-27	21-27	24-30	30-37	37-46	41-51
16	31-37	24-30	27-33	33-41	41-51	46-57
17	27-33	30-37	33-41	41-51	51-63	57-71
18	27-33	30-37	33-41	41-51	51-63	57-71
19	30-37	33-41	37-46	46-57	57-71	63-78
20	33-41	37-46	41-51	51-63	63-78	70-87
21	37-46	41-51	46-57	57-71	70-87	77-96
22	41-51	46-57	51-63	63-78	77-96	84-105
23	46-57	51-63	57-71	70-87	84-105	92-115
24	51-63	57-71	63-78	77-96	92-115	100-125
25	57-71	63-78	70-87	84-105	100-125	110-137
26	63-78	70-87	78-97	92-115	110-137	120-150
27	70-87	78-97	87-108	100-125	120-150	130-162
28	78-97	87-108	97-121	110-137	130-162	140-175
29	87-108	97-121	108-135	121-151	140-175	151-188
30	97-121	108-135	121-151	135-168	151-188	168-210
31	108-135	121-151	135-168	151-188	168-210	188-235
32	121-151	135-168	151-188	168-210	188-235	210-262
33	135-168	151-188	168-210	188-235	210-262	235-293
34	151-188	168-210	188-235	210-262	235-293	262-327
35	168-210	188-235	210-262	235-293	262-327	293-365
36	188-235	210-262	235-293	262-327	293-365	324-405
37	210-262	235-293	262-327	293-365	324-405	360-life
38	235-293	262-327	293-365	324-405	360-life	360-life
39	262-327	293-365	324-405	360-life	360-life	360-life
40	293-365	324-405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41	324-405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42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43	life	life	life	life	life	life

Guidelines Manual (November 1, 2021) | 607

### 3-3. 영국

#### 2006년 동물 보호법

- 2007년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2006)
- 최대 6개월

#### 2021년 개정

- 최대 5년(고통), 최대1년(복지)
-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함.
- 동물에 대한 위해 최대 5년
- 동의없이 반려동물 사거나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 연령 16세로 조정

## 3-4. 영국양형기준

-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 마련,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줌.
-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
- **2021 동물복지법 개정되면서 2021 바로 양형기준 조정안 마련 및 적용**

## 3-4. 영국의 양형기준



# 동물학대 범죄 1단계: 죄질 판단

## A-High(상)

- 심각한 학대 및 또는 가학적 행동의 장기간, 반복적인 사건
- 상당한 무력(force) 사용
- 불법행위의 주도적 역할

## B-medium(중)

- 고통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불필요한 시도
- 장기간 또는 반복되는 학대 또는 방치 사건
- 상당한 무력 사용
- 동물 복지에 대한 고의적 무시(치료방치포함)

## C-low(하)

- 의도는 좋았으나 무능한 돌봄
- 순간적 혹은 짧은 판단력 상실
- 강압, 협박, 또는 착취에 의한 참여
- 그범죄행위유발과 관련한 정신장애 혹은 학습장애

# 피해수준 판단

## 유형1

- 사망(안락사가 필요한 상해 포함)
- 특히 중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해 또는 상태
- 매우 높은 수준의 고통 또는 괴로움

## 유형2

- 상당하거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해 또는 상태를 초래한 위법행위(꼬리뭉기, 귀자르기 등 유사절단 사례)
- 상당한 수준의 고통 또는 괴로움

## 유형3

- 신체적 발달적 위해나 스트레스가 거의 없음
- 기타 다른 모든 수준의 고통 또는 괴로움

## 2단계: 양형 출발점과 선고범위

피해 수준	구간	죄질		
		상	중	하
유형1	출발점	징역 1년 6개월	26주 구금	낮은 수준 사회내 처우
	범위	26주 ~ 3년 구금	18주~1년 구금	밴드B 벌금~ 중간 수준 사회내처우
유형2	출발점	26주간의 구금	12주 구금	밴드C 벌금
	범위	18주~1년 구금	중간 수준 사회내처우~ 26주 구금	밴드B 벌금~낮은 수준 사회내처우
유형3	출발점	12주간의 구금	중간 수준 사회내처우	밴드B벌금
	범위	중간수준 사회내처우~ 26주의 구금	낮은 수준 사회내처우~ 높은 수준의 사회내처우	밴드A벌금~밴드C벌금

- 벌금 A: 주급의 50% 시작
- 벌금 B: 주급의 100% 시작
- 벌금 C: 주급의 150% 시작

## 3단계: 가중요인 및 감경요인

### • 법적 가중사유

- a) 유죄 판결과 관련된 범죄의 성격 및 현재 범죄와의 관련성, b) 유죄판결 이후 경과된 시간
- 보석 중에 저지른 범죄
- 동물 소유자, 종교, 인종, 장애, 성적 지향성에 대한 특성 또는 추정에 기반하여 적개심을 나타내거나 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경우

## 기타 가중사유

- 현재 법원 명령 불이행인 경우
- 면허 또는 보호관찰 기간 중인 경우
- 피해 동물의 수가 상당한 경우
- 무기 사용
- 경험이나 훈련이 부족한 사람이 동물을 돌보도록 허용하는 행위
- 자기위해/수술/흉포 또는 주장하는 세분 사항/사진/비디오 등을 유포하는 기술 사용
- 경고나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전문가적 조언 획득을 거부
-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히기 위해 다른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 동물에 대한 직업적 책임이 있는 범죄자
-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 저지른 범죄
- 피해 동물 회복을 위해 상당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 공공 서비스 또는 보조견으로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범죄
-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소유자에게 고통이 발생한 경우

## 감경요인

- 이전 범죄전력 없거나 관련/최근 유죄판결 기록 없는 경우
- 반성
- 좋은 성품 및/또는 모범적인 행동
- 긴급하거나, 집중적 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피고인의 의학적 상태
- 연령 및/또는 성숙도 부족
- 범죄 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정신 장애 또는 학습 장애
- 부양 가족을 위한 단독 또는 생계책임자
- 당국에 자발적으로 소유권 포기
- 조사 협조
- 공범 없는 단독 사건

### 3단계: 보상 및 보조명령 (소유권 박탈, 자격박탈)

• 모든 경우에 법원은 동물에 대한 소유권 박탈 및 다른 보상을 명령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 범죄로 인해 개인 상해, 손실 또는 고통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보상을 제시해야 함 (Sentencing Code, s.55).

• 소유권 박탈은 다른 처벌에 추가 혹은 대안으로 명령 가능.

### • 2006년 동물 복지법에 다 행 위 유 죄 시 소 유 권 박 탈

- 불필요한 고통 유발(s.4);
- 절단(s.5);
- 개의 꼬리 도킹(ss.6(1) 및 6(2));
- 독극물 투여 등(s.7);
- 싸움 등(s.8);
- 복지 보장 의무 위반(s.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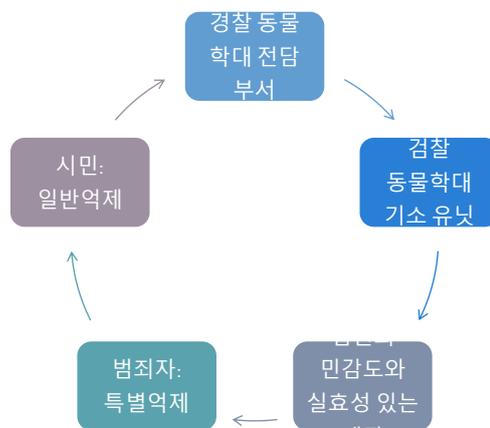
## 4. 우리나라 양형기준 방향성

## 4-1. 양형기준에 대한 당위적 고민과 방향성

동물학대 행위 양형기준 마련의 당위성+α

취약성에 대한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음</li> <li>• 진지한 반성 인자- 피해자에게 반성이 전달될 수 없음- <b>소유주가 없을시, 인정불가</b></li> </ul>
구체적 유형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 추가</li> <li>• 사이트 게재, SNS 전파 행위</li> </ul>
가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앞에서의 행위 가중 (<b>괴롭힘, 싸움, 성적학대 등</b>)</li> <li>• 혐오범죄와 연결 되는 경우 가중 처벌+위험성 평가</li> </ul>
동종범죄 및 범죄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 동물, 반복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li> <li>• <b>Per animal. Per day(벌금 및 형량 산정시)</b></li> </ul>
선고 처분 및 부수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단계에서는 가처분/ <b>몰수, 소유 및 양육 금지 제도/ 집행유예 조건- 보호관찰 의무 (특별준수사항 부과)</b></li> </ul>

## 5. 마무리: 더 나아가는 기대



어제의 법은 그들을 위한 법이고, 내일의 법은 우리를 위한 법이다(JEANNIE SUK)

# 감사합니다.

#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

#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관하여



## *Sentencing Guidelines*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유정우 판사

## 목차

1. 서론 → 양형기준의 제정 목적, 설정 절차 및 마련의 구체적 과정
2.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
3. 양형기준 마련의 현실적 한계
4.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5. 양형기준을 마련할 경우 가능한 안
6. 결론

# 1. 서론(양형기준의 제정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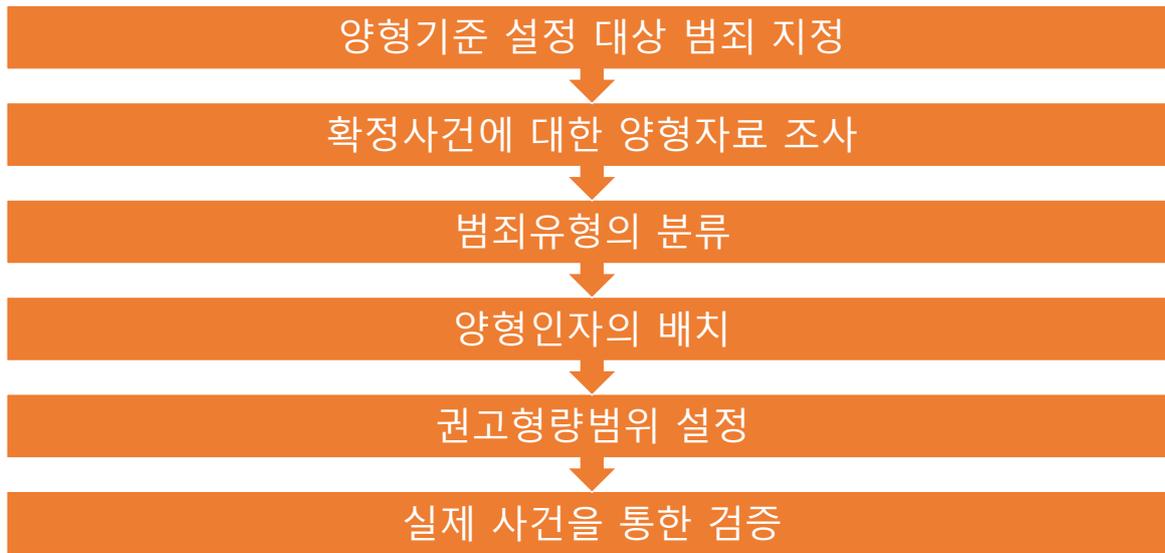
- 양형기준이란?
    -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 제정 목적
    - 불합리한 양형편차 해소: 양형의 균등성과 일관성 요구
    - 공공의 안전 증진과 범죄 예방
    - 책임비례성 실현: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 부과 요구
    -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 ※ 주의점: 양형기준 설정에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을 박탈해서는 안 됨.  
법관의 합리적 양형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

# 1. 서론(양형기준의 설정 절차)

## Ⅰ 양형기준 설정 절차

1.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전문위원 담당, 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2. 양형기준안 의결	위원회/소위원회 담당, 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
3. 공청회 및 의견조회	위원회 담당,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4. 양형기준안 수정	위원회/소위원회 담당, 위원회는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
5. 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	위원회 담당,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

## 1. 서론(양형기준 마련의 구체적 과정)



## 1. 서론(양형기준 대상 설정범죄 지정)

- 양형위원회 출범 후 모든 범죄가 아닌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함
- 양형기준 대상 설정범죄의 기준으로, 양형기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국민적 관심과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를 우선적으로 제정하기로 함
- 한편 양형기준 설정의 접근방식으로 기술적 접근방식(과거 양형실례를 수집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함
- 기술적 접근방식을 취함에 따라 통계수치에 의거하여 평균형량과 분포도를 산출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의 판결 선고 개수 존재가 중요

## 1. 서론(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 대상범죄 선정 후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양형자료분석관들이 조사에 착수함
- 양형자료분석관들은 양형위원회에 속한 법원 직원들로, 형시기록과 판결문을 직접 대조하고,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작업을 같이 실시함
- 아울러 대상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일반인과 법조계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함

## 2.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

- 현재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들
  -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음
-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는 보호법익인 동물의 권리 보호 필요성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 동물학대범죄의 경우 양형의 편차가 상당한 편이므로, 양형기준 설정시 양형의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이 가능함

### 3. 양형기준 마련의 현실적 한계

- **기술적 접근에서 필요한 다수 사건의 존재 내지 사례 축적의 부족**
  - 피해대상이 사람인 범죄에 비하여 기소되어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례가 상당히 부족함. 현재 상황에서 평균형량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사례가 축적되었다고 하기 어려움
- **양형기준 미설정 다른 범죄들과의 우선 순위**
  - 8기(현재) 양형위원회 조만간 종료 예정. 9기 양형위원회는 내년 4월에 출범 예정인데, 스토킹범죄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우선으로 보임. 그 외 다른 범죄들과 비교하여 동물학대범죄가 우선적으로 양형기준 대상 설정범죄로 지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3. 양형기준 마련의 현실적 한계

- **권고 형량범위 설정의 문제**
  - 형량 증가 범위가 크거나, 형량범위의 폭이 좁을 경우 일선 법관들이 그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일선 법관들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할 경우 양형기준의 실효성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실효성의 문제(벌금형 선고의 경우 양형기준 미적용)**
  - 현행 양형기준은 법관이 처단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적용이 안 됨(공직선거법은 예외). 실제 동물학대 사건에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더라도 현행 방식이면 그 양형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 상존함

## 4.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 사례 축적의 부족에 관하여

- 실제 사례가 부족한 이상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하여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그러한 작업을 하더라도 실제 사례의 분석작업을 통한 결과 발생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검증 및 적용,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가 아닌 해외의 사례나 가공된 사례에 대한 양형인자 분석을 양형위원회에서 인정하거나 채용하여 줄 지는 의문임

## 4.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 사례 축적의 부족에 관하여

- 양형기준 설정에 있어서 기술적 접근방식이 원칙이지만 **규범적 접근방식**(형사정책적, 철학적 관점에서 양형정책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방식)도 가미될 수 있음
- 실사례가 부족한 동물학대범죄에 있어서 규범적 접근방식을 원용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발제자들이 언급한 사정들, 즉, 동물학대범죄가 약자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라는 점, 처벌 강화가 향후 인간에 대한 유사한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논거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4.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 양형기준 미설정 다른 범죄들과의 우선순위 비교

- 양형기준 대상 범죄로 지정되기 위한 중요기준으로,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 직결 여부, 범죄발생 빈도**를 들 수 있으므로, 어떠한 범죄를 우선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위 기준에 따른 우열 선별이 중요함
- 동물학대범죄가 타 범죄들보다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의 설정 대상 범죄가 되려면 위와 같은 기준 충족이 중요하고, 특히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와의 연관성이 중요함. 이는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환기와 저변 확장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고 사료됨
- 결국 **사회적 여론의 중요성**

## 4.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 권고 형량범위 설정의 경우

- 권고형의 하한과 상한 설정이 지나치게 높아져서는 곤란하고, 적절한 범위 설정이 중요함. 그래야 양형기준의 실효성이 확보됨
- 양형기준 마련은 적절한 형의 선고를 위한 것이지 엄벌주의를 관철하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도 안 됨

### ▪ 벌금형 선고의 문제

- 벌금형에 있어서도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있으나 아직 다수의 지위는 아님
- 선거범죄 양형기준처럼 벌금형에 관하여도 범위 설정이 가능한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5. 양형기준을 마련할 경우 가능한 안

### ■ 1안

-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 준하여 동물학대범죄를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범 죄유형에 분류하는 안
- 이는 동물의 법적 지위와 연관된다고 사료됨. 현재처럼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에 머무른다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피해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 보임(물건에 대한 학대 등 유형력의 행사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의 법적 지위가 향상된다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피해대상에 포함될 여지 충분함
- 현실적으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과정과 내용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 5. 양형기준을 마련할 경우 가능한 안

### ■ 2안

- 동물학대범죄를 다른 범죄군과 독립된 범죄군으로 분류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안
-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와 관계 없이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
- 다만 이는 동물학대범죄의 죄질과 처벌필요성에 대하여 양형위원회가 상당 부분 공감하여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아동학대범죄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에 속해 있음. 그 범죄군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독립된 범죄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음
-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동물학대범죄를 별도의 범죄군으로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6. 결론

-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함
-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실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절차와 과정을 살펴보면, 특정 범죄에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생각보다 지난한 작업에 해당하고, 실제 사례의 축적 부족 등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제약하는 한계 요인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나 장애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양형기준 마련과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더욱 엄정한 처벌은 사회 전반의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동물권에 대한 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감사합니다



*Sentencing Guidelines*

# 국내 동물범죄 수사의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하여

강남경찰서 경제7팀

김영준 수사관

# 국내 동물범죄 수사의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하여

강남경찰서 경제7팀

김영준 수사관

올해는 동물보호법 제정 3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92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시민사회 및 여타 각계각층의 갖은 노력으로 말미암아 일반 대중들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고취되고 있는 반면, 동물보호법위반 범죄(이하 “동물범죄”) 발생 건수는 배로 증가하고 있고, 경찰 단계에서의 송치율 및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법원 단계에서의 양형기준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범죄 특성상 수사와 혐의 입증의 어려움에도, 끈기와 집념으로 피의자를 추적 수사하여 검거, 송치하였던 제 짧은 수사 경험과 일선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신 수사관들을 주위에서 직접 지켜봐 온 경험들을 토대로 ‘국내 동물범죄 수사의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물범죄 수사는 피해 당사자인 피학대동물이 말을 할 수 없다는, 대인범죄와 명확히 구분되는 차이점에서 기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동물범죄는 수사 개시의 단계에 있어 타 범죄보다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수사 개시하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직접 고소, 112 범죄 신고 등이 수사의 주요 단서가 되는 타 범죄와 달리, 동물범죄의 경우 피해 당사자인 피학대동물은 직접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제3자에 의한 고발, 112 범죄 신고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다수의 동물범죄 특성상 외부로 그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제3자에 의해 인지되어 신고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혹 제3자에 의해 사후 피해 현장이 목격되어도 동물의 교통사고 등 일반 피해와의 구분이 쉽지 않아 신고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로, 동물범죄는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특정 및 증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물범죄는 피해 당사자인 피학대동물에게서는 피해 진술을 청취할 수 없어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는 정황증거에 더욱 의존하여야 하고, 혐의 입증에 있어서는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보다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또는 피의자의 자백이 요구됩니다.

또한, 피학대동물이 그 자체로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치유됨에 따라 증거가 자연 소멸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동물범죄의 경우, 별도 개인정보의 입력 없이도 아무런 제약 없이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특성과 피의자의 유동 IP, VPN을 통한 우회 IP 사용 등으로 그 추적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일례로 제가 수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본인이 키우는 햄스터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커뮤니티 게시판에 고정 닉네임을 이용하여 게시하였는데, 고정 닉네임이 특정되었음에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에 보유한 회원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 파기하였다고 하므로 게시물 게시 당시 IP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곱요청을 하였으나 로그IP 조회 결과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게시물 게시로 유동 IP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본 범행 이전에 게시한 수백 개의 게시물을 확인, 가까스로 게시물 내 피의자의 SNS(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확보하여 해외 기업에 대하여 압수영장을 집행,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 학대 게시물 게시 당시 IP주소와 위 인스타그램 접속 IP주소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게시물 게시 행위 외 학대 행위 자체에 대한 혐의 입증은 피의자의 자백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동물범죄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현 제도와 체계 등에서 기인한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존재합니다. 동물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는 각 경찰서의 사무분장에 따른 경제범죄수사팀 또는 지능범죄수사팀으로서 전국 공통의 일원화된 전문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기타 특별법 사범을 수사하는 경제범죄수사팀에서 동물범죄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성 있는 수사가 많이 요구되지 않는 다수의 일반 경제범죄 고소, 고발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팀 단위보다는 개인 단위로 개별 사건의 수사 과정 전체를 전담하는 경제범죄수사팀의 수사 현실상 범행 현장 보존 및 분석, 증거 확보, CCTV 추적 등 현장성 있는 수사가 종종 요구되는 동물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변사 등 대인 사건의 경우, 담당 형사, 국과수 직원, 검시조사관, 검안의 등이 현장에 임장하여 현장을 보존 및 분석하고, 증거 확보를 하는 등 이미 정립된 절차와 방식, 전문 인력 및 장비에 의해 일관성 있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데에 반해, 동물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범죄 인지 후 현장에 출동하여 사료 등의 독성 검사는 국과수에, 사체 부검은 직접 사체를 확보하여 일반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부검 의뢰를 하고 있어 기관 간의 순수한 공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문 인력, 장비, 제도, 절차 등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동물범죄 수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 동물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 카드뉴스 등을 직접 작성하여 대중에 배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동물범죄의 신고 및 대응을 위해 홍보에 힘써온 결과, 올 한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동물범죄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등 대중의 동물범죄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사뭇 다를 것을 몸소 체감하였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대중의 동물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범죄의 유형 및 처벌 수위, 동물범죄 판단 체크리스트, 동물범죄 초기 신고 및 대응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의자 특정 및 증거 확보 등 동물범죄 수사에 적극

기여한 시민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발맞추어 동물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위해 경찰서 또는 지방청 단위의 일원화된 동물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동물범죄 수사 및 보호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범죄 유형에 따른 단계별 대처방안을 포함하는 등 동물범죄 수사를 위한 매뉴얼을 보다 보완하고 내실화하여 수사 실무의 지침으로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하고, 동물범죄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자문위원회 및 윈스톱으로 동물의 사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물을 고양이 10여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전시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이른바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 피의자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것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판단의 이유에는 절도, 재물손괴 등 타죄와의 경합에 따른 선고형의 차이도 존재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위반 사범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징역, 집행유예 등 중형이 선고된 사건들에는 대인 범죄인 폭행, 절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타죄와의 경합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단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단순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물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위가 보다 향상되어 동물보호법위반만으로도 수단이 아닌 본질로서의 생명, 그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서 마땅히 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물 법적지위에 따른 처벌의 한계 및 개선 방향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서국화 변호사 / 대표

# 동물 법적 지위에 따른 처벌의 한계 및 개선 방향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동물을 보호하는 혹은 이용하는 여러 법률에 따라 동물은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법적지위를 가진다. 동물범죄 양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아무래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일 것이다. 대부분의 동물학대 범죄가 ‘벌금형’을 받는데 불과했던 과거와 달리 징역형, 더 나아가 실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법원이 과거와 달리 나름대로 동물학대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양형이 재판을 담당할 판사 개인의 기준과 감수성에 따라 복불복이라는 점은 여전히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동물 대상 범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앞서 이슈가 된 사건을 중심으로 여론을 의식한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여론을 의식한다는 것은 시민의식과 사회 구성원의 법감정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므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법원의 통일된 중대성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 또는 통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발의되어 있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에 희망을 걸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동물학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일관된 인식이 부재한 이유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도 있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물건 아닌 존재를 물건으로 다루고 있는, 상식과는 거리가 먼 민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왔던 ‘재물손괴’를 함께 기소하지 못하게 되어 단순히 적용 규정만 놓고 보면 오히려 ‘물건이 아니게 됨으로 인해 양형이 낮아지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되어버린다. 이에 대하여 민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동물 학대 범죄’의 중대성에 관한 법원의 인식이 높아져서 저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동물 학대 범죄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형식적 문구 삽입이 있어야 법원의 인식 재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막막하지만 말이다.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대하여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당연히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동물 대상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후 양형위원회가 자리잡아갈 당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의 뒤늦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처벌의 한계’ 문제는 ‘어차피 죽을 동물’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범죄로 다루어질 수조차 없는 그 동물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 동물들에 대한 범죄의 처벌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적절한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법 전체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일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은 어떤 동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인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동물인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동물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가 ‘생명’을 가진, 본질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그 당연한 사실이 모든 법률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 국내 시민사회 동물범죄 대응 현실

동물권행동 카라 / 정책행동팀

윤성모 활동가

# 국내 시민사회 동물범죄 대응 현실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

윤성모 활동가

## 1.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늘 토론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발제와 토론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동물학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은 범죄자에 대해 강력처벌의 목소리를 외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학대 대응 활동 내용을 카라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게시물이 올라가면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내용의 댓글이 달립니다. 대부분은 학대자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중에는 “학대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달라”, “신상 공개해야 한다”, “사형시켜야 한다” 라는 내용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2. 동물범죄의 특수성

시민들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이처럼 분노하며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물범죄의 세 가지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생명에 대한 존엄성 위배, 둘째,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의 연결, 셋째, 동물의 법적 지위 관련입니다.

동물범죄는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폭력 행위입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쳐 이 땅에 태어난 생명체입니다. 살아 숨쉬며 움직이고, 고통도 느낍니다.

지난 11월 25일, 미국 막스 델브뤼크센터 연구팀은 문어의 뇌 발달과정이 인간의 뇌 발달과정과 매우 유사하여 복잡한 뇌 기능을 갖춘다는 사실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문어는 사람을 알아볼 정도의 지각 능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문어를 산 채로 삶아 요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향한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체인 동물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동물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생명권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며, 시민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물학대범의 폭력성이 사람에게 이어지는 데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호순, 유영철, 이영학 등의 사례가 늘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동물학대 폭력성이 인간에게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특정 연구 결과나 전문가들의 주장을 넘어 이미 우리 사회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 <SBS 그것이알고싶다 1318회>에서 집중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카라에서도 대응 중인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은 사람을 향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한동대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피고인은 케어테이커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손괴한 것은 물론, 이전 근무처에서 사람을 향한 폭행 행위까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고양이를 학대하고 그 사체를 대학교나 초등학교에 전시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정신적, 심리적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학대 받고 피해 당한 동물은 일방적인 폭력 행위 앞에서 무력한 상태가 됩니다. 아프다고 어디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처럼 자신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동학대 범죄 특징과도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물의 법적 지위로 인해 범죄 피해를 당한 동물의 상황은 아동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3. 시민사회 동물범죄 대응 현실 사례

카라는 동물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물범죄의 특수성이 국내 시민사회 동물범죄 대응 현실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동물권행동 카라 학대 대응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라에 접수되는 동물학대 시민제보 중에 사체를 발견해서 112에 신고하였으나 사건 접수를 받지 않으려 하는 경찰 안내를 받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경찰로부터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전화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2021년 카라에서 온라인 동물학대 게시물을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문의하세요’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범죄는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조차 범죄 대응을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군포시 산본동 고양이 살해 현장을 방문하여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지구대 경찰은 사건 접수를 하는 동안 ‘이러한 (동물)사건은 범인 잡기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도 하루면 다 사라져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11월, 성북천에서 코에 출혈이 발생한 채 사망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사건이 있습니다. 출혈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부검 의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양이를 돌보던 케어테이커들이 112에 신고하여 성북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신고자에게 ‘동물학대 정황이 확인되어야 부검 의뢰를 보내겠다’라는 안내를 하며 부검 의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부검을 하여야 동물학대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논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카라는 청문감사관실과 소통하여 동물범죄 초동 수사의 문제점을 알렸고 결국 피해 고양이의 부검은 사건 신고된 지 4일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행정이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피학대동물 긴급격리를 위한 현장 조사와 소유권 포기를 위한 소유자 설득 과정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카라에서 여주시 불법 개 도살장을 급습하였을 때 여주시 동물보호감시원은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가고 한참 뒤에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개들이 도살 목적으로 트럭에 실려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 소극적이고 관련 법령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과 카라 활동가들이 법령을 알려주고 설명하는 상황마저 발생했습니다.

이는 여주시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카라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14세 아동이 6개월 동안 쓰레기더미 자택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치된 학대 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보호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였으나, 반려견은 홀로 학대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 이후 아동은 다른 장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같은 학대 환경에 처해있었던 반려견은 그 누구의 손길도 받지 못했습니다.

카라는 학대 현장에 처한 반려견을 구조하고 치료하여 보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강남구청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 소방서에 협력 요청을 하였으나 강남구 동물관리팀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현장에 왔던 카라, 경찰, 소방대원들은 모두 허무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남구 담당자로부터 ‘동물학대는 경찰 업무이고 지자체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소극적인 행정 문제는 어떤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라가 가는 곳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평창군에서 수년 동안 마당 쇠목줄에 묶인 채 생활한 고양이들이 있었습니다.

카라는 고양이를 기르는 주민과 고양이의 복지와 돌봄 방식의 개선에 대해 소통하였습니다. 주민은 주변에서 고양이를 죽이려고 쥐약을 놓았고 그로 인해 그동안 돌봐주던 고양이들이 죽는 것을 여러번 보다보니 그들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라도 기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카라는 고양이들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중성화 및 치료를 진행하는 평창군 동물복지 개선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민단체에서 오로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창군청 담당자와 소통하며 중성화 수술장소 협조, 마을 문제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동행, 쥐약 대응 및 길고양이 인식 개선 홍보를 요청하며 평창군에 프로젝트 일정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창군 담당자는 결국 현장에 오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사전연락도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이후에도 마을 일대 쥐약 문제와 길고양이 공존 인식 개선 문제가 남아있었고 이에 대해 평창군에 구체적인 요청을 하였으나 여전히 소통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 동물보호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16조에는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너무나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에 필요한 지원은커녕, 시민들의 동물학대

신고나 단체의 협력 요청을 외면하거나 민원 처내기식의 소극적인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4. 양형기준 수립이 필요한 이유

국내 시민사회 동물범죄 대응 현실에서 겪는 일부 경찰 또는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소극적인 모습 속에서, 마치 ‘동물학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듯한 그들의 태도를 느꼈습니다.

사실상 재판부에서부터 동물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없이 소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것이 결국 수사기관이나 지자체 행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 여파는 피해 동물, 그리고 시민들에게까지 여러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동물학대 방지 제도 강화’를 추가하였습니다.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없습니다.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재판부에서 동물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와 같은 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경찰과 지자체의 동물범죄 대응 모습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의 권리 제고는 물론, 동물 생명 존엄성에 대한 국가 사회적 의식의 향상, 시민의 정서 보존 및 안전 도모, 나아가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으로까지 점차 이어질 것입니다. 동물범죄 양형기준을 속히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학대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 |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모색